

제 21 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요강

[2018 년도 봄학기 파견 대비]



1. 취지

-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학문적,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한국의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선발 인원 : 250명 내외

- 상경 40%, 인문사회 30%, 이공 25%, 기타(예체능 및 의학) 5% 내외 비율로 선발 예정
- 대학별, 국가별 TO 없음 (단, 선발비율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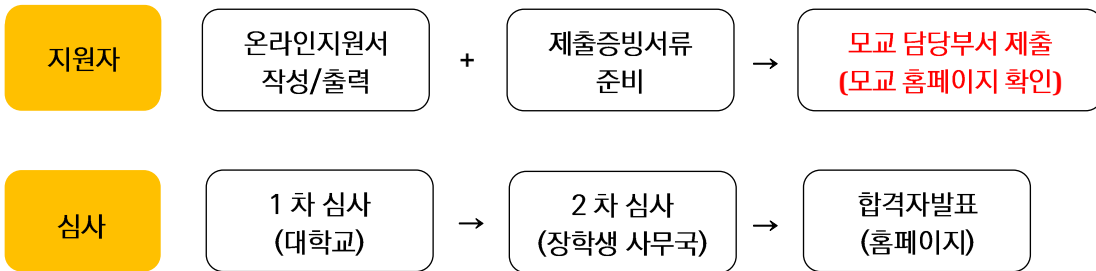
3. 선발일정

일정	구분	비고
9/20(수) 14시 ~ 9/27(수) 17시	온라인 지원	온라인 지원/출력 후 제출서류와 함께 학교 제출
10월 중순 ~ 11월 말	1, 2차 심사	
12/11(월)	합격자 발표	지원자 개별확인(홈페이지/메일)
12/27(수)	수여식 및 OT	중소기업중앙회관(서울 여의도)
2018.1월 중순	장학금 지급	장학생 사무국 → 각 학교

-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**장학생 합격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합격 취소 됩니다.**

4. 선발절차 : 1 차 대학, 2 차 미래에셋 심사 후 서류전형으로만 선발 (면접 절차 없음)



- 모교의 1차 심사의 경우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, 선발요강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 2차 심사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
5. 온라인 지원 및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

- 미래에셋박현주재단 (<http://foundation.miraeasset.com>)
-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위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웹사이트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단, 온라인 지원서 아이디핀으로 로그인하오니 사전에 준비 바랍니다.

6.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

□ 장학금 명목 :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

□ 장학금 지급 기준

국가 분류	장학금액
미주/유럽/기타	700만원
아시아	500만원

□ 장학금 지급기간 : 2018년 봄학기 (한학기 지원)

-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 또는 재지원 불가
- 한 학기 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도 2018년 봄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 1회 지원

□ 장학금 지급방법 : 모교로 일괄 지급

- 장학금은 '장학생 사무국 → 각 대학 → 장학생' 순서로 지급
- 장학생 사무국은 개별 장학생에게 직접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만 장학금 지급

7. 장학금 중복수혜

-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및 재단의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
단,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교 및 파견국가(정부 또는 파견교)의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
-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
- 모교 및 타 기관의 성적, 근로, 포상, 생활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
- 단, 미래에셋은 중복수혜를 인정하더라도 모교 및 타 기관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모교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.

8. 심사 우대사항 (우대사항이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)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가정, 국가유공자(유족)자녀, 다자녀(3명 이상)가정 우대
-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참여자
- 다음페이지 '9.지원자격'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대사항만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불가

9. 지원자격 (아래의 지원자격 1~5 번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)

1. 대한민국 국적으로 4 년제 국내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								
<p>□ 규정학기 초과자 및 2017 년도 2 학기 휴학생도 지원가능 (단, 대학원생, 외국인(또는 외국국적, 이중국적 소지자) 지원불가)</p>								
2. 2018 년 봄학기 교환학생 파견자격을 재학 중 최초로 획득(또는 획득 예정)하여, 파견기간 동안 모교 재학 상태를 유지하며,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								
<p>□ 지원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환학생, 방문학생, 복수학위제, 현지학기제 등으로 파견 - 현재(장학생 지원기간 중) 모교의 교환학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, 파견교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단, 장학생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모교의 교환학생 자격 미획득시 합격 자동 취소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단, 합격자 발표일 이후 파견교는 변경 가능하나 파견국가 변경시 합격 자동 취소</p> <p>□ 지원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(2017 년 2 학기)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수학 중인 자 - 해외 교환학생 기간 중 타기업에서 진행되는 인턴십을 병행하는 자 (학기/학점이 인정되어도 지원불가) - 과거 교환학생, 방문학생, 복수학위제, 현지학기제 등 교환학생 성격의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자 								
3. 전공 : 전공무관 (상경/인문사회/이공/기타(예체능 및 의학) 계열로 나누어 지원)								
<p>□ 반드시 본인의 본전공으로 지원 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/복수전공으로 파견되더라도 장학생 지원시에는 본인의 본전공 계열로 지원 예) 본 전공이 영문학과고, 경영학 복수전공의 경우 → '인문사회계열' 로 지원 <p>□ 지원계열 분류는 소속 대학 기준이 아닌 '장학생 사무국' 기준으로 분류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- 장학생 사무국 기준 지원계열 분류표는 '첨부 02. 자주 묻는 질문' 참고</p>								
4. 성적 : 직전학과와 총평점이 모두 3.5/4.5 만점(3.3/4.3 만점) 이상인 자 (동시충족)								
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□ 성적 미달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</p> <p>□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전학기는 9 학점 이상 이수한 정규 학기(2017 년 1 학기)를 의미함 - 휴학생의 직전학기는 휴학 전 정규학기를 의미함 - 2017년도 편입생의 경우 현재 소속대학의 2017 년 1 학기 성적이 직전학과와 총평점으로 반영 - <u>대외제출용 성적증명서로 제출 (발급시 F 학점 및 재수강 과목 포함 유무 선택 가능시, 지원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)</u> - 성적표에 4.3 만점 및 4.5 만점이 모두 기재된 경우,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원하여도 무방하나, 본인이 계산한 환산 점수 및 반올림 인정불가, 직전학기/총평점 각각 다른 만점기준 적용 인정 불가 								
5. 경제적 여건 : 아래 Case1,2 중 본인 해당사항 선택								
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□ 소득분위 및 기준금액 초과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</p> <p>□ Case1. 2017 년 2 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 분위 이내인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마지막 페이지 별첨 1 참고 - 2017 년 2 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만 인정 (2017 년 2 학기 이외 타 학기 소득분위 인정 불가) <p>□ Case2. 부모 각각 최근 3 개월(2017.5~7)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 합산이 가입자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보험 금액 계산방법 및 가입자구분별 제출서류 확인은 마지막 페이지 별첨 2 참고 - 가구인원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, 기타 경제적 여건 증명서 인정 불가(예.부채증명서 등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D700;">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D700;">직장가입자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D700;">혼합가입자(직장+지역, 의료급여+직장/지역)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FD700;">지역세대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부+모 합산금액</td> <td>20 만원 이하</td> <td>23 만원 이하</td> <td>25 만원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	직장가입자	혼합가입자(직장+지역, 의료급여+직장/지역)	지역세대주	부+모 합산금액	20 만원 이하	23 만원 이하	25 만원 이하
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	직장가입자	혼합가입자(직장+지역, 의료급여+직장/지역)	지역세대주					
부+모 합산금액	20 만원 이하	23 만원 이하	25 만원 이하					

10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명
필수제출서류 1)~3)	1)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(온라인 작성 후 출력) 2) 자기소개서 1부 (온라인 작성 후 출력) - 1),2) 에 해당하는 서류는 온라인 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/출력 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 3)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- 단,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 성적증명서 및 현재 대학 성적증명서 총 2부 제출
필수제출서류 4)	Case1. 2017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-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마지막 페이지 별첨1 참고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소득분위 정보 출력 (지원자 성명/소득분위/통지일자 포함 필수) - 소득분위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아래 7)번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- 제출한 소득분위는 모교를 통해 진위 여부 재확인하며, 임의로 수정한 경우 심사제외 또는 합격취소 Case2. 부모 각각 최근 3개월(2017.5~7) 건강보험료 평균 고지금액 합산이 가입자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 - 건강보험 제출서류 발급 및 금액 계산방법은 마지막 페이지 별첨2 참고 ① 부/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(첨부3 또는 온라인 지원페이지에서 지정양식 출력 후 서명) ② 부/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③ 부/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2017.5~7월 고지금액 포함 필수)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- '기초/차상위/장애인/국가유공자/다자녀' 해당자는 반드시 '부 또는 모'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(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 기준 모두 발급 가능, 단, 주민등록등본 인정 불가) - 부모님 이혼/사망의 경우,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서류만 제출 (재혼의 경우, 재혼자 서류 포함 필수) - 의료급여자의 경우, ①, ④번 서류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필수
선택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함)	5) (부모님 이혼의 경우)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/ 발급기관 : 주민센터 -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으로 발급시 서류 미비로 간주하여 서류심사 제외 6) 봉사활동 증명서 1부 (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해당자) - 인정기간 및 활동 : 대학입학 이후(휴학기간 포함)의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봉사활동 (헌혈 포함) 단, 해외봉사활동 및 교내 학생회, 홍보대사, 외국인 버디, 종교활동, 단순 활동증명서 제출은 인정 불가 - VMS, 1365, 모교 홈페이지 봉사활동인증서 출력시 반드시 세부내역 모두 출력 (일자, 활동내용, 봉사시간 등이 활동별로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인정불가) 7) 본인, 부모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/ 발급기관 : 주민센터 - 차상위계층 증명서 예시 :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8) 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- 장애인증명서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/ 발급기관 : 주민센터 9) 본인 국가유공자(유족) 자녀 의 경우 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서 1부 (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) / 발급기관 : 보훈(지)청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 가능한자

※ 제출서류는 발급기관 직접방문, 온라인 발급(흑백/컬러), FAX 발급, 복사본 모두 인정 (단, 사진촬영본 출력 후 제출은 인정불가)

※ 제출 서류는 개인의 주민등록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부착 필수

※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(1 차 서류 심사 제외)
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기간 종료 이후 5 일 이내 폐기

11. 장학생 의무사항

분류	내용
파견 전	-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
파견 후	- 과제 제출 (자유양식, 장학생 카페 게시) : 파견교 소개, 글로벌리포트 - 성적표 제출 (지정양식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이수과목 및 성적 의무사항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3 과목 이상 필수 이수 (본인의 본전공/복수전공 수업 1 과목 포함 필수) - 파견교 성적표 기준 평균 B 학점 이상 (예. 3.0/4.0, 85/100, 3.5/4.5 이상 등) </div>

12. 장학생 취소 및 장학금 중지(회수) 사유

- 선발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
-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(수여식 참석, 과제제출 및 성적표 제출 등)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성적이 B 학점 미만인 경우
- 장학생 지원/합격 이후 파견국가 변경의 경우 (단, 동일 국가 내 파견교 변경은 가능)
- 모교 및 파견 대학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
- 파견학기에 모교 미등록 또는 휴학한 경우
- 파견기간 동안 교환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또는 재단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(단, 모교/파견교/정부/타기관의 성적/저소득/포상/근로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인정)
- 파견기간 동안 타 기업 또는 재단의 인턴을 병행하는 자 (학점인정/무급 여부 상관 없음)
- 기타 장학생 사무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
13. 미래에셋 장학생 사무국 연락처

구분	연락처	문의가능시간
이메일	student@miraeasset.com	수시
전화문의	02-3774-7463,7465	오후 2시 ~ 5시

※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메일 문의 이용 바람, 전화문의는 지정된 문의 가능 시간에 이용 바랍니다.

※ 전화문의는 부모님이 아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문의

[별첨 1] 소득분위 확인방법

- 1단계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saf.go.kr>) > 장학금 > 나의 소득구간(분위) 확인
- 2단계 : 소득구간(분위) 확인 페이지 출력 (캡처본 출력 가능)
 - 이름/주민등록번호 앞자리/소득구간/통지일자 포함 필수
 - **제출한 소득분위는 모교를 통해 진위 여부 재확인하며, 임의로 수정한 경우 심사제외 또는 합격취소**

소득구간(분위)확인

◆ 신청학생 정보

이름	주민등록번호	소득구간(분위)(소득인정액)	소득구간(분위) 통지일자	국외 소득-재산 신고대상자 선정결과

※ 소득구간(분위)은 동일 학기 중 최초 선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.
 단, 이의신청에 따라 소득구간(분위)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소득구간(분위)의 적용기준은 개별 학자금지원제도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
 ※ '소득구간(분위)'은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소득인정액(가구합산)을 선정하므로 학기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일 경우 '국외 소득-재산'과 '국내 소득-재산'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구간(분위) 선정
 ■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 입학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-재산 신고 가능

[별첨 2] 건강보험 제출서류 발급 및 금액 계산방법

- 1단계 : 부모님 건강보험 관련서류 발급

구분	발급처	비고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 (직접방문, 온라인, FAX 등)	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	2017.5~7 고지금액 확인

- 2단계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가입자구분 확인

발급번호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
확인청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
자격득실확인내역				
No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
1	직장가입자		2013.04.22	
2	직장피부양자		2013.02.28	2013.04.22

<확인방법>
- 자격상실일이 공란인 행의 가입자 구분이 현재 유효한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

- 3단계 : 가입자 구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대상자 확인
 - 직장가입자/지역세대주인 경우, 해당자 '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' 발급 **(4단계 진행)**
 - 직장피부양자/지역세대원인 경우, 서류 제출 의무 없음 (지원서 기재시 0원 입력)

- 4단계 : 최근 3개월(2017.5~7) 건강보험 고지금액 평균 계산

건강·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				
발급번호 :	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요양보험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건강· 장기요양보험료		
가입자 명칭	_____	주민등록번호	_____	
사업장 명칭	_____	납부자번호	_____	
2017년 5월 ~ 2017년 7월 건강·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내역				
	고지금액		납부금액	
월별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
5월	100,000 원			
6월	110,000 원			
7월	120,000 원			
장기요양보험료 및 납부금액 확인 필요 없음				

<계산방법>
※ 계산식: 최근 3개월(2017.5~7)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÷ 고지개월수
※ 예시 : (10만원+11만원+12만원) ÷ 3 = 11만원
 - '고지금액'은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금액은 합산 제외
 - '고지개월수'는 실제 고지금액 유무에 따라 '3 / 2 / 1 개월' 이 될 수 있음 (고지금액 0 원은 개월수 합산시 제외)
 - **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의 경우, 각각 평균 고지금액 계산 후 합산**

□ 5단계 : 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 충족여부 확인

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	직장가입자	혼합가입자(직장+지역, 의료+직장/지역)	지역세대주
부+모 합산금액	20 만원 이하	23 만원 이하	25 만원 이하

□ 6단계 : 부모님 가입자 구분별 제출서류 및 온라인 지원서 기재사항

사례	부	모	제출서류	온라인 지원서 기재
1	직장 가입자	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	- 가입자구분 : 직장가입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-계산금액, 모-0 원
2		직장가입자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,모	- 가입자구분 : 직장가입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-각각 계산금액
3		지역세대주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,모	- 가입자구분 : 혼합가입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-각각 계산금액
4	지역 세대주	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	- 가입자구분 : 지역세대주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-계산금액, 모-0 원
5		직장가입자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,모	- 가입자구분 : 혼합가입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-각각 계산금액
6		지역세대주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부,모	- 가입자구분 : 지역세대주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-각각 계산금액
7	의료 급여	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주	- 자격득실확인서 : 모 - 납부확인서 : 모 - 의료급여증명서 : 부	- 가입자구분 : 의료급여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-0, 모-계산금액
8		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	- 자격득실확인서 : 모 - 납부확인서 : 해당없음 (미제출) - 의료급여증명서 : 부	- 가입자구분 : 의료급여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 -각각 0 원
9		의료급여	- 의료급여증명서 : 부,모 (부/모 동시 기재된 경우 1 장만 제출)	- 가입자구분 : 의료급여자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 -각각 0 원
10	부모님 두 분 모두 '직장피부양자/지역세대원' 인 경우		- 자격득실확인서 : 부,모 - 납부확인서 : 해당없음 (미제출)	- 가입자구분 : 기타 선택 - 지원서기재 : 부,모 -각각 0 원
11	부모님 사망/이혼/실종의 경우		- 위 예시를 적용하여 '현재 본인을 부양하는 부모님 한 분'에 대한 서류 준비 - 사망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(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 여부 확인 가능) -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 필수 - 재혼의 경우 재혼한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 서류 제출 필수 - 실종의 경우 실종 사실 증명서류 추가 제출 필수 예)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	
12	최근 직장변동, 퇴직 등으로 가입자구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		- '지원서 작성일자 기준'의 가입자 구분으로 위 예시를 적용하여 경제적 여건 서류 준비	

※ 위 표에 예시가 없더라도 지원자 부모님의 가입자 유형을 적용하여 제출서류 준비와 온라인 지원서 기재

예) '모' 직장가입자, '부' 직장피부양자인 경우, '사례1번' 참고

* 제출서류 : 자격득실확인서(부,모), 납부확인서(모)

* 온라인 지원서 기재 : 가입자구분(직장가입자 선택), 지원서기재(부-0 원, 모-계산금액)

※ 위 예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장학생 사무국으로 이메일 문의 (student@miraeasset.com) 바랍니다.